

**Sale of Food Act (Chapter 283)
Food (Amendment) regulations 2021**

식품판매법 섹션 56(1)에 근거하여 다음의 규정을 신설함.

개정내용

규정 55 개정: 식품 규정의 규정 55 (4) 직후에 다음을 삽입하여 개정함.

(4A) 라면은 2,000 ppm을 초과하지 않는 양의 을 함유할 수 있다.”

표 4의 Part 1 수정(보존료): “디저트(과일을 기반으로 한 우유 및 크림)” 의 보존료 사용허용이 추가됨.

	1(아산화황)	2(인산화산)	3(메칠파라벤)	4(소브산)	5(아질산 나트륨)	6(질산 나트륨)
디저트(과일을 기반으로 한 우유 및 크림)		1,000		1,000		

표 10의 수정: 표 10의 (b)의 (13)뒤에 다음을 삽입하여 개정함.

“(13A) 지방 스프레드 0.1(As) 0.04(Pb)”.

표 13의 수정(감미료): 식품 규정에 대한 열세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.

(a) “발효한 채소 및 조류 제품(발효 간장 제외)” 항목 뒤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 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옴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오스)
디저트(과일을 기반으로 한 우유 및 크림)					330	

(b) “코코아를 기반으로 한 스프레드(필링 포함)” 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옴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오스)
코코아를 기반으로 한 스프레드 (필링 포함)					330	

(c) “빵 및 빵류와 이 제품들의 믹스” 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스)
빵 및 빵류와 이 제품들의 믹스					160	

(d) “곡분 당과 제품 및 이 제품들의 믹스(특수영양학적 용도의 식품에만 사용)” 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스)
곡분 당과 제품 및 이 제품들의 믹스 (특수영양학 적 용도의 식품에만 사용)					330	

(e) “반보존 생선 및 수산물 (연체류, 갑각류, 극피동물 포함) (달고 신 제품에만 적용 가능)” 항목 바로 위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스)
반보존 캐비어 및 기타 어란제품					100	

(f) “반보존 생선 및 수산물 (연체류, 갑각류, 극피동물 포함) (달고 신 제품에만 적용 가능)” 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스)
반보존 생선 및 수산물 (연체류, 갑각류, 극피동물 포함) (달고 신 제품에만 적용 가능)					100	

(g) “완전 보존 처리된 생선 및 수산물 (캔에 담거나 발효한 것) (연체류, 갑각류, 극피동물 포함) (달고 신 제품에만 적용 가능)”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팜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테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스)
완전 보존					100	

처리된 생선 및 수산물 (캔에 담거나 발효한 것) (연체류, 갑각류, 극피동물 포함) (달고 신 제품에만 적용						
---	--	--	--	--	--	--

(g) “머스타드”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람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티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오스)
머스타드					130	

(i) “스프, 육수 및 이들의 믹스” 에 다음의 항목을 삽입하여 개정함.

	1(아세살람)	2(사카린)	3(사이클로메이트)	4(네오탐)	5 (스티비올배당체)	6(수크랄로오스)
스프, 육수 및 이들의 믹스					50	

시행일: 2021. 10. 01